

# 예산총칙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54,700,000	25,641,000
일반회계	690,700,000	20,721,000
일반회계	690,700,000	20,721,000
기타특별회계	58,600,000	1,758,000
주택사업특별회계	550,000	16,5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950,000	388,5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50,000	46,5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90,000	143,70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0,000	3,600
치수사업특별회계	1,500,000	45,0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30,000	39,9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400,000	12,000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00,000	39,000
청소사업특별회계	31,100,000	933,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700,000	21,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000	6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10,000	9,300
공기업특별회계	105,400,000	3,162,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2,000,000	1,86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400,000	1,302,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48,62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다음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5. 재해 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